

## 2024년 전북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담관리 특허사무소와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전략적인 특허출원 및 우수 특허 발굴 등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목적

- 특허 출원전부터 중간사건, 등록, 연차관리까지 우리 대학 맞춤형 특허 전담 관리 사무소 필요
- 기술분야별 전문 특허사무소 선정 및 운영을 통한 특허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핵심 내용 권리화를 통한 양질의 특허 창출

### □ 모집 분야

#### ○ 신청자격

- 해당 기술 분야 전공 변리사 및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한 관련 사무소 또는 법인
-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업무 수입 단가(붙임 2) 참고)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사무소 또는 법인

## ○ 신청분야

기술분야	선정 사무소
전기/전자/정보(IT)/통신	기술 분야별 3 ~ 4개사 내외 선정
금속/고분자/나노소재/화학/화공/환경	
바이오(의공)·의약/미생물/농생명/식품	
기계/건축/토목/기타	

※ 기술 분야별 선정 사무소 수는 지원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1개사 2개 분야 이내 신청 가능

## ○ 주요 수행 업무 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중간사건, 등록 등 전반 업무(필요시 연차관리)
- 발명자 상담(사전 미팅, 발명인터뷰 참석),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 협력

※ 선행기술조사, 단순 자문 및 협조는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 신청 조건

### ○ 공고 및 접수 기한

- 기한 : 2024. 2. 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기술비즈니스센터 이남훈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붙임 1], \*발표자료 8부
  - \*발표자료는 1차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 연락 및 제출 요청 함
  - 증빙자료 : 각 실적 증빙자료 일체
- ※ 모든 서류는 인쇄본과 파일본(USB)을 같이 동봉하여 제출
- 문의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남훈(T. 063-270-4881, namhun@jbn.ac.kr)

## □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24. 1. 24.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2024. 1. 24 ~ 2. 2.	제안서 접수
2024. 2. 5. ~ 2. 7.	1차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2024. 2. 16. ~ 2. 19.	2차 대면 평가 및 결과 통보
2024. 2. 20. ~ 2. 23.	협약체결
2024. 3. 1. ~	전담특허사무소 업무 수행

※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협약기간 : 2년(2024. 3. 1. ~ 2026. 2.28.)

## □ 평가 및 선정방법

### ○ 선정 원칙

-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 선정
-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인력, 기술 등) 능력과 작업장/장비 등의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 선정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열의를 가진 업체 선정

### ○ 평가 방법

#### ① 1차 서류평가

- 신청업체 및 수행책임자 자격 등 적합성 검토
- 기술분야별 2배 이내 후보선정(개별통보)

평가항목	항목배점
2021~2023년도 출원 건수	30
2021~2023년도 특허 등록률	20
전문성(전문인력 인원 및 경력)	30
2021~2023년도 기술이전 건수	20
<b>취득 총 점수</b>	<b>총 100점</b>

※ 전문인력 기준 : 변리사, 명세서 작성 업무 경력자 각 3년 이상(관리인력 제외)

② 2차 대면평가 :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대면발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항목 배점
특허	신청 기술분야의 전문성	○ 변리사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 신청 기술분야 변리사 보유 현황/전문인력 경력 등 - 분야별 전문인력 전공 세부 구성	30
	업무수행 능력/서비스	○ 출원 전 발명자 상담(사전 미팅, 발명인터뷰), 학교업무의 적극적 협조여부 등 ○ 선행기술조사 전문성	20
	제안업체 평가 (사무소 전체 실적)	○ 사업실적(특허출원, 심판, 소송 등) ○ 전체 직원 평균 근무 기간	20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및 전략	○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여부 ○ 기술이전/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5
기타	특별제안	○ 특별제안의 내용 및 실행 가능성	5
<b>취득 총 점수</b>			<b>총 100점</b>

※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 항목 평가시, 타 분야 전문인력은 제외

○ 평가 점수 산출 방식

-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계
-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평가 결과 공개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①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 ⑤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⑦ 계약 기간 내 평가에서 특허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 기간 내라도 계약대상 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⑧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전북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 제안서

2024. 2.

신청기술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 전담특허사무소 신청분야 총괄표

- 신청 분야 :
- 평가항목 실적 총괄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실적			계
		2021	2022	2023	
특허	○ 출원 건수				
	○ 등록 건수				
	○ 거절 건수				
기술이전 / 사업화	○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구분	세부평가항목	실적		비고	
전문성	○ 총 변리사 인원(명)				
	○ 해당분야 전문인력 인원(명) (변리사, 명세서작성 업무 경력자)				
	○ 해당분야 전문인력 경력(개월)				

2024. 2.00.

제안업체명

대표자 0 0 0 (인)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 팩스			
대 표 메 일			
회사설립 년도		매출액	백만원
대 표 자	성명		
	전화 / 이메일		
담 당 자	성명 / 직책		
	전화 / 이메일		
<p>주요 연혁 및 소개</p>			



## 2.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사무소 전체)

전문분야	성명	직위(급)	경력(개월) /근속년수	전공	최종학위	주요 경력

※ 전체 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 必

## 2-1.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신청 기술분야)

전문분야	성명	직위(급)	경력(개월) /근속년수	전공	최종학위	주요 경력

※ 해당 기술분야 인력에 한하여 작성

※ 해당 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 必



### 3. 사업수행 전략 및 차별적 우위요소

- 전담 변리사의 전문성/성과 상세 기술
  - 제안사의 업무 네트워크 활용방안
  -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 서비스 방안 계획
    - 지식재산권 교육, 발명자 상담, 컨설팅 여부 및 방식 등
    - 대학 발명신고서 작성시 협력 등 행정업무 협조 방안 등
    - 발명인터뷰 운영 방안 등
  - 전북대학교만의 특화된 기술이전 중개 전략
    - 대학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추진 전략 제시
  - [해당시] 특허개발(발굴) 전략 및 고객사 활용 사례
  - [해당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활용 사례
  - 기술이전 활성화 전략 등
  - [해당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우수 사례
  - 기타 차별적 우위요소 자유 기재
- ※ 정해진 서식 없음(자유형식)  
※ 수행 전략 및 실제 사례 위주로 작성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심판·소송 실적(전체)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거래처 및 실적
국내	출원				•
	등록				•
	거절				•
국내	심판				•
	소송				•
해외	PCT				•
	출원				•
	등록				•

※ 리스트 파일 별도 첨부-USB 저장 제출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심판·소송 실적(신청분야)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거래처 및 실적
국내	출원				•
	등록				•
	거절				•
국내	심판				•
	소송				•
해외	PCT				•
	출원				•
	등록				•

※ 리스트 파일 별도 첨부-USB 저장 제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최근 3년)

순	기업명(고객사명)	계약일	총 계약금액	선급 기술료	기술명 (기술보유자)	공급 기관(사)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증빙은 발주기관 확인서 및 계약서 중개기관 명기, 자유양식, 확인서는 계약금액 명시)

[붙임 2]

##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권 수가표

### 1. 국내 비용

<단위 : 원>

항목	세부 항목		착수금	등록 성사금 및 기타
일반출원	특허		900,000	(성사금) 600,000
	실용신안		400,000	(성사금) 280,000
	디자인	기본료	200,000	(성사금) 200,000
	상표	기본료	100,000	(성사금) 100,000
선행기술조사			200,000	미출원 시에만 지급
특수출원	특허청구범위 유예 제도	기본료	200,000	본 출원 미진행시 지급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	기본료	200,000	본 출원 미진행시 지급
	변경출원	특허 → 실용신안	200,000	최종 등록형태 성사금 지급
		실용신안 → 특허		
	분할출원	특허	200,000	
		실용신안	100,000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	특허	200,000		
	실용신안	100,000		
중간사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최초 1회 한함	200,000	기재 불비 : 무료
관리	재심사 청구		200,000	
	우선심사 신청		100,000	
	심사청구, 서지사항 정정		0	
	특허(디자인) 조기공개 신청		30,000	
	출원인 명의변경(양도)		30,000	
	권리자 명의변경(양도)		30,000	
	연차관리비		10,000	
심판	감정		1,000,000	(협의 후 결정)
	사정계 심판(불복심판 등)		500,000	
	당사자계 심판		1,000,000	(협의 후 결정)

2. 해외 비용

<단위 : 원>

항목	세부 항목		착수금	등록 성사금 및 기타	
해외출원	개별국 출원	1개 국당	1,000,000	(성사금) 560,000	
	PCT 출원	국제출원		800,000	
		국내단계		800,000	(성사금) 560,000
		한-영		30,000	
		한-일		25,000	
		한-중		30,000	
		기타		30,000	
		중간사건	IDS 제출		50,000
	RR(한정요구)			100,000	
	OA 대응			200,000	
	RCE(재심사청구)			200,000	
	불복심판			200,000	
	관리	출원인 명의변경(양도)		30,000	
		권리자 명의변경(양도)		30,000	
		연차관리비		10,000	
	EP개별국 진입	번역료, 해외대리인 수수료만 지급			

- ※ 상기 착수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 ※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 및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본 출원 미진행시에 한하여 지급
- ※ 관납료, 해외 현지 대리인의 수수료는 별도임
- ※ 기타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 ※ 단순 자문 및 협조는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